

- 9) 휴직 또는 파견 등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만 청원휴직(육아휴직 제외)을 허가할 수 있다.  
단, 의무복무를 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의무복무기간이 발생하는 예: 유학휴직 종료 후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, 국외연수파견 종료 후 파견기간의 2배, 서울대·교원대 등 선발연수 파견 종료 후 파견기간의 1배 등)

## 5. 기타

- 1) 청원휴직의 심사기준은 초등과 중등에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, 청원 휴직의 종류에 따라 초·중등의 여건이 특별히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.
- 2) 청원휴직과 관련하여 본 기준 이외에 심사에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3) 향후 경기도의 교원수급 사항, 기간제교사 증가, 교육과정 운영 등이 개선될 경우 청원휴직의 종류별 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.
- 4) 휴직 또는 파견 등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경과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원면직을 할 수 없으며, 다만 의무복무를 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